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11.12.12>

공용차량 { 정수배정
용도변경
규모변경
차량교체 } 확 인 서

1. 번호 제 호

2. 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함

등록할 차량		등록말소할 차량	
차량소속기관		차량소속기관	
규모		규모	
차명		차명	
연식		연식	
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 차량구분		기관번호	
		등록번호	
비고		비고	

비고 :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.